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의 견 서

(남궁역 의원)

정원도시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원도시국 소관 사안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46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원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국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